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사자·순직자 등 추서진급자의 진급된 계급에 따른 예우〉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43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2
------------------	---

※ 참고자료

1. 최근 10년간 추서 진급 현황	8
---------------------------	---

2. 개정안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월액 변동	9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0.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군인사법이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진급된 사람의 급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전사자와 순직자로 추서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0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u>

- 현재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1항¹⁾의 규정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도달하지 않거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도 진급을 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인사법」은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급을 포함한 임용, 복무, 교육훈련,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의 각종 급여 지급 규정체계²⁾와 유사하게

1) 제30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등은 「공무원연금법」,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공무원재해보상법」, 그 밖의 보상금, 수당,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연금 및 각종 예우는 해당 개별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즉, 유족급여는 「군인연금법」에,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은 「군인재해보상법」에, 그 밖에 보상금, 수당,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개별법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등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예우로는 생활조정수당, 부양가족수당 등 보훈급여금 및 전사자·순직자 가족의 교육·취업지원 등이 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될 경우 추서된 진급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동되는 급여 및 예우는 순직유족연금(또는 일시금)과 군인사망조위금이며, 기타 사항은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적용됨.

[추서 진급된 계급 적용시 각종 급여 및 예우 변동 사항]

구 분	변동 여부	지급 기준	관련 법령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변동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	군인재해보상법 / 시행령
사망조위금	변동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	
사망보상금	변동 없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4 ~ 60배 (공무상 사망 ~ 전사)	
보상금	변동 없음	고정된 월 지급액 기준 (배우자, 자녀 등 구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생활조정수당	변동 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	
부양가족수당	변동 없음	고정된 월 지급액 기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구분)	
교육지원	변동 없음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기관의 취학시킬 의무 부여 등	
취업지원	변동 없음	취업기관, 채용시 가점, 국가기관 채용의무, 기업체 우선고용 의무 부여 등	

- 현재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은 「군인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일은 전사·순직일의 전일(前日)인 반면, 추서진급은 전사·순직일 기준으로 진급되므로 관련 급여는 현재 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임.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략)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생략)

「군인재해보상법」 및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법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급여의 산정은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시행령 제11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② (중략) “**기준소득월액**” 및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 한편, 최근 10년 간 추서 진급 현황을 보면, 영관급 장교 9명, 위관급 장교 15명, 부사관 32명 등 총 56명임. 추서진급자가 연평균 5.6명 발생함을 가정하여 개정안과 같이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경우 국방부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유족연금액 1.3억 원, 사망조위금 0.15억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추서진급자 유족연금지급 추계 현황(2025~2029)]

(단위 : 명, 천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대상인원	5.6	11.2	16.8	22.4	28.0	-
추가 재정소요	8,198	16,691	25,489	34,605	44,048	129,031

- 연평균 추서진급자가 5.6명 신규 발생함을 가정함 (최근 10년간 56명 발생)
- 추서진급 시 1인당 연금월액이 평균 119,016원 증가함을 가정함 (참고자료 2)

[추서진급자 군인사망조위금 지급 추계 현황(2025~2029)]

(단위 : 명, 천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대상인원	5.6	5.6	5.6	5.6	5.6	-
추가 재정소요	2,868	2,940	3,013	3,089	3,166	15,077

- 연평균 추서진급자가 5.6명 신규 발생함을 가정함 (최근 10년간 56명 발생)
-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지급
- 추가 재정소요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임

□ 이와 같이 동 개정안은 현재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한 전사자 및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급여가 진급 전 계급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전사자와 순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및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전사자·순직자 유족들에게 비록 그 액수는 적을지라도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심 제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은 크다고 할 것임.

□ 다만, 전사자 및 순직자의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등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군인사법」을 개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급여 지급은 「군인재해보상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개정(기준소득월액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군인사법」에 보상과 예우 조항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 측면에서도,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22대 국회에서 일반공무원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의 지급액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의안번호 제953호, 제1105호)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³⁾.

또한,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4534호)이 소관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일반공무원, 경찰, 소방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법체계적으로는 「군인사법」 보다는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추서 진급자의 급여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3) 21대 국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발의되었으나,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임기만료폐기됨.

문 의 처
02)6788-5310

※ 참고자료

1. 최근 10년간 추서 진급 현황

구 분	계	장성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계	56	0	2	1	6	9	2	4	9	10	13
'23년	-	-	-	-	-	-	-	-	-	-	-
'22년	5	-	1	-	1	2	-	1	-	-	-
'21년	7	-	-	-	1	1	-	-	1	2	2
'20년	3	-	-	-	-	-	-	1	2	-	-
'19년	5	-	-	-	-	1	-	-	1	1	2
'18년	10	-	1	1	2	2	-	-	-	2	2
'17년	7	-	-	-	-	-	-	1	2	3	1
'16년	9	-	-	-	2	2	-	1	2	1	1
'15년	6	-	-	-	-	1	2	-	1	1	1
'14년	4	-	-	-	-	-	-	-	-	-	4

자료 : 국방부제출

2. 개정안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월액 변동(최근 10년간 추서진급자 기준)

(단위 : 원)

추서 계급	인원 (A)	대상자 1인 평균 연금월액			총 증가액(A*B)
		현행	법 개정 후	증가액(B)	
계	56	-	-	119,016	6,664,890
대령	2	5,495,355	5,503,800	8,445	16,890
중령	1	4,074,710	4,243,300	168,590	168,590
소령	6	2,992,840	3,186,580	193,740	1,162,440
대위	9	1,538,728	1,630,128	91,400	822,600
중위	2	1,396,810	1,396,810	0	0
준위	4	4,336,845	4,826,983	490,138	1,960,552
원사	9	3,264,554	3,415,074	150,520	1,354,680
상사	10	1,912,829	2,029,240	116,411	1,164,110
중사	13	1,481,938	1,483,094	1,156	15,028

-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지급
- 기준소득월액이 최저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적은 중위는 진급된 계급으로 산출시에도 금액 변동 없음. (최저기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0%)